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상조약 관련 정부 보고 대상 확대 등〉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84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통상조약 관련 정부 보고 대상 확대	3
2.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결과 보고	9
※ 참고자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9.
3. 회부연월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체결계획, 영향평가, 협상결과 및 이행상황 등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조약은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통상조약 체결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관한 보고 대상 위원회를 확대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 등).

Ⅲ. 검토의견

1. 통상조약 관련 정부 보고 대상 확대(안 제5조, 제6조 등)

개정안은 (1) 정부에 대해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에 관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위원회 중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를 “관련 위원회”로 변경하고, (2) 정부가 통상조약체결계획 및 협상결과 등을 보고하거나 통상협상 진행 중 변경사항 등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 ----- -----관련 위원회-----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생략)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②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한다.

③ (생략)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그 경과 및 주요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

-----.

1. ~ 3.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
-----.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① -----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에 보고하여야 한다.	----- ----- <u>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u> ----- -----.
1. ~ 4. (생략) ②·③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¹⁾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통상협상 진행 중 계획의 중요 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 및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치거나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국회 산자중기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보고받은 그 통상협상 진행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통상절차법에서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상조약은 ①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경제 연합체에 가입하거나 다른 국가 등과 체결하는 조약 중 ②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동의 대상인 조약으로서 ③ WTO, FTA 등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또는 경제통상 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을 말함.

[표 2] 현행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 보고 등 현황

구 분			현 행
• 진행 중인 통상협상 및 서명이 완료된 통상 조약에 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제5조)			외통위, 산자중기위, 통상 관련 특별위
보 고 대 상	• 수립된 통상조약체결계획(제6조)		산자중기위
	• 통상협상 진행 (제10조)	1.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과급효과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협상의 진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산자중기위
	• 협상결과(제12조)		산자중기위
	• 통상조약 이행상황 (제15조)	1. 발효된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 2.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 방안 3. 상대국 정부의 조약상 의무 이행상황 등 통상조약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사항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자중기위
•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제10조)			산자중기위

개정안은 이러한 보고대상 위원회에 현행 산자중기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① 통상조약법의 입법 취지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²⁾과,

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통상협상 및 통상조약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농·수산업, 금융, 교육, 환경, 교통, 통신 등 여러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교역 조건을 규정하고 있어, 통상협상 추진 과정에서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각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표 3]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 진행중인 통상협상 및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보고·서류제출 요구	외통위, 산자중기위, 통상 관련 특별위	외통위, 산자중기위, 관련 위원회
• 수립된 통상조약체결계획, 통상협상 진행, 협상결과, 통상조약 이행상황 보고대상 • 통상협상에 대한 의견제시	산자중기위	산자중기위, 관련 위원회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동 법률의 제정(2012.1.17, 제정, 2012.7.18. 시행) 당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서 통상협상 진행 과정의 보고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³⁾로 규정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소관위원회로 일원화 한 바가 있고,

현행 「국회법」 상 관련 위원회 회부제도⁴⁾를 통해 통상 관련 안건이

3) 통상절차법 제정 당시 보고와 관련된 발의안 내용

구분	김종철의원안	이정희의원안	송영길의원안	천정배의원안	이영애의원안	박선영의원안
협상 진행 절차	○ 협상의 중요 진행 상황의 국회 소관 위원회 보고	○ 협상 진행상황의 정기적 국회 보고	○ 협상의 주요 쟁점 등에 대한 국회 소관 위원회 보고	○ 협상 주요 진행상황 국회 보고	○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 소관 위원회 보고	○ 진행상황 국회 보고

자료: 통상절차법안 검토보고서, 2011.10, 외교통상통일위원회

4) 「국회법」

제83조(관련위원회회부) ①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는 점,

현행 통상조약법 제5조⁵⁾에서도 통상협상 관련 사항이 복수 위원회 소관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필요시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통상조약 및 통상협상의 보고대상을 관련 위원회로 확대할 경우, 해석에 따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관련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수의 관련 위원회 보고 등에 따른 절차 지연으로 인해 협상 적기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행정운영 및 통상협상 추진에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2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④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소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련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관련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정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또는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2.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결과 보고(안 제9조)

개정안은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경우, 통상조약이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해당 검토 결과를 국회 산자중기위 및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 5]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u>통상조약</u>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효된 통상조약을 포함한 그 밖의 조약의 이행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협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① ----- ----- <u>통상조약이</u> <u>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u> <u>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상조약</u> ----- ----- ---. ----- -----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u> <u>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마</u> <u>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u> <u>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u> <u>및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현행법 제9조6)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이전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토사항의 구체적 요소와 검토 결과의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이러한 통상협상의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검토·보고 등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시 조약 체결이 국내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 산자중기위 및 관련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통상협상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제9조제3항에서 신설하고 있는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의 별도 보고 조항에 대해서는 제6조7)에 따른 통상조

6)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발효된 통상조약을 포함한 그 밖의 조약의 이행에 따라 요구되는 통상협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관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의뢰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7)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이하 “통상조약체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2.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3.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4. 통상협상과 관련된 주요국 동향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약체결계획의 산자중기위 보고 시 제9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도 함께 보고하고 있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의 보고대상을 산자중기위 외에 관련 위원
회로 확대하는 것은 다수의 관련 상임위원회 보고에 따른 통상협상 대
응 지연⁸⁾ 등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
장임.

문 의 처
02)6788-546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진행 중인 협상이 통상협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수립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8)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몽골 및 한-조지아 EPA 추진계획의 경우 2023. 4. 5.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후 2023. 9. 21.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안건(77번)으로 상정·보고된바, 국회 상임위 일정에 따라 통상조약체
결계획 수립 후 보고 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임.

참고자료

통상조약법상 주요 규정

○ 국회 보고

기본 조항 (제5조)	정부는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통상 관련 특별위원회 요구 시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
----------------	---

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보고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 ※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통상협상의 예상 주요쟁점 및 대응방향 등
---	--



통상협상 진행 중 중요사항 변경 시 보고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 중요사항 변경, 국내 산업 등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협상의 진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 ※ 다만,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가능
-------------------------------------	--



서명 후 협상결과의 보고(제1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후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
------------------------	---



비준동의의 요청 (제13조)	정부는 통상조약의 서명 후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 ※ 비준동의 요청시 제출 자료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결과 2. 통상조약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3.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4. 통상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발효 후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약의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
--------------------------------------	--